

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년 6월 18일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, 포항시장
- 2)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- 3) 상정일자
 - 제33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 -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신정희 재정관리과장)

1)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위임사항이 변경됨에 따라, 해당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-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 감면율 및 감면기간 정비(안 제9조의3)
 - 당초 : 100분의 50
 - 변경 :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

3) 관계법령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